

산업기술연구소 규정

제1조(설치 및 명칭)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두며 그 명칭은 선문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02.10.1>
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기업들의 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·생산활동을 지원하고, 산학협동을 통하여 경제·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2.10.1>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02.10.1>

1.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관련 분야 연구
2. 신기술·신제품 개발 연구
3. 정례 연구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
4. 위 각 호의 연구결과에 대한 공업화 또는 산업화에 관한 연구

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명과 부소장 1명을 둔다.

- ② 연구사업은 산학공동연구 형태로 구성하며,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팀장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다.
- ③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원을 두고,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소장 및 부소장) 연구소의 소장 및 부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팀장) ① 팀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팀장은 소관 분야의 연구를 총괄하고 소속팀을 감독한다.

제7조(연구원 및 객원연구원) ① 각 팀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, 객원 연구원은 타교 또는 타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일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사항을 조사 연구한다.

제8조(강좌개설)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- ② 본조 제1항의 특수강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연구소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-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
2.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
3. 연구계획,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
4. 연구소 관련 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교내연구비, 외부연구비, 교내지원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〈개정 2002.10.1〉

제13조(연구비 지급 및 관리)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교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다.〈개정 2002.10.1〉

제14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5조(규정의 준용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〈1993.5.1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1997.9.1〉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2.10.1〉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